# 한국 벤처생태계 완성을 위한 정책제언

**허영구**((사)벤처기업협회 실장)

## Ⅰ. 한국 벤처생태계의 현주소

올해 7월 발간한 맥킨지코리아의 '스타트업코리아' 보고서는 우리나라 벤처생태계를 실증적으로 진단하고 글로벌 혁신경쟁 시대에 한국 스타트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한국 벤처기업의 최근 5년간 고용증가율이 8%로서 30대 그룹의 고용증가율 1.3%를 크게 앞질렀고, 매출액 증가율도 전년대비 8.6%로서 대기업(-4.7%) 이나 중소기업(8.0%) 보다 높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기회형 창업비중이 21%에 그치고 있고 스타트업의 시장진입 환경도 65개국 중 49위에 머무른다고 밝혔다. 더욱이 2016년초 미국의 시장조사업체 CB인사이트가 선정한 세계 100대 인공지능(AI)분야 스타트업 가운데 한국 업체는 단 한 곳 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림 1.** 선순환 벤처생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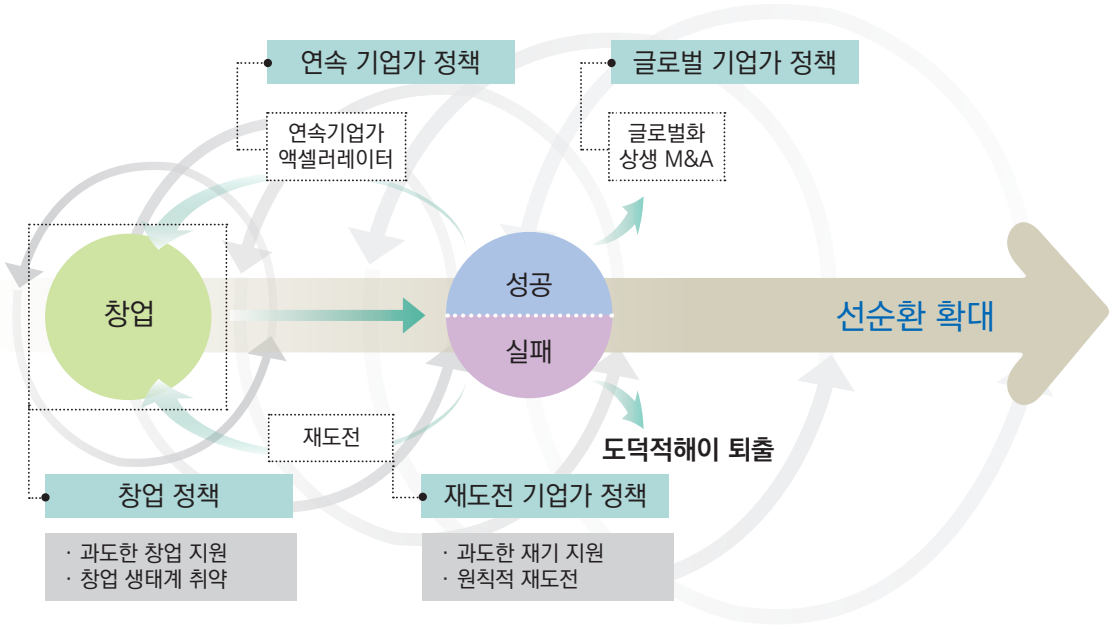


※ 자료: (사) 창조경제연구회

## Ⅱ. 선순환 벤처생태계란

기술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가볍게 창업하고 기술경쟁으로 성장하며, 필요한 시기에 제값받고 Exit 하며 신용에 관계없이 재도전 하는 환경을 '선순환 벤처생태계' 라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향하는 이상적인 기업생태계 실현을 위해 전체 사이클에서 미흡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짚어 보겠다. 먼저 정부의 창업정책이다. 이제 창업정책은 개별기업의 창업지원 보다는 창업 생태계 조성에 집중하여야 한다. 또한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높은 생계형 창업지원을 지양하고 기회형 창업을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은 재도전 기업가 정책이다. 한국에서 경영재기를 가로막고 있는 과도한 연대보증 부담, 연대보증인의 채무부종성 불인정 문제, 과점주주 2차 납세 의무 그리고 경영실패 기업가에 대한 대한 배임 적용 등의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 또한 선순환 투자의 핵심인 연속기업가(serial entrepreneur) 정책이다. 즉, 성공한 기업인의 재투자로 후배기업의 창업을 돕는 일이다.

창업실패를 확실히 줄일 수 있는 사내벤처 정책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내기업가를 육성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성실실패를 장려하는 쪽으로 조직문화가 변해야 한다. 다음은 글로벌화 정책인데, 글로벌화는 글로벌 플랫폼을 확보하고 우리기업의 현지화를 지원하며 해외시장 경쟁력이 높은 중견벤처의 글로벌화에 집중하여야 하며 무엇보다도 본 글로벌 확산에 주력하여야 한다. 또한 상생형 M&A를 활성화하여야 하는데 창업의 혁신이 시장의 효율과 연결되는 스케일-업 정책을 통해 성장과 고용을 동시에 달성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끝으로 벤처기업 거래유형의 71%가 B2B인 점을 감안하면 기업간의 공정거래 질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 다시 말해서 혁신을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과 시장을 담당하는 대기업의 협력이 중요하며, 불공정 거래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 하고 규모가 다른 기업간의 협상력의 균형도 중요한 요소다.

## Ⅲ. 한국 벤처생태계의 5대 과제

한국의 벤처기업 20년 역사 동안 형성된 벤처환경을 기초로 앞으로 제3기 벤처시내에서 해결하여야 할 핵심 현안과제를 살펴보면, 먼저 M&A를 활성화하여 열악한 회수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 창업을 촉진하고 선순환 벤처생태계를 구축하는 핵심요소인 회수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는 M&A 중개인프라를 구축하고 세제지원을 강화하며 민간영역의 M&A 촉진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CVC(Corporate Venture Capital)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야 한다. 다음은 '시장논리' 중심의 벤처투자로 전환하는 문제이다. 창업-성장-회수 등 기업 전생애에 걸친 선순환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전문엔젤제도를 개선하고 초기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크라우드펀딩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야 한다. 또한 성실실패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재도전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기술성 보유기업에게 창업 7년까지는 연대보증을 면제해 창업단계를 넘어 성장단계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를 폐지하여 경영재기의 발판을 구축해 주어야 한다.

더불어 창업규제의 근본적 해결책으로서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을 검토하여야 한다. 기술창업 벤처기업에 한해 창업후 일정기간 동안 진입규제, 영업규제 등의 각종 규제적용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최소한의 네거티브 방식 규제만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마지막으로 대중소 상생의 열쇠로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 대중소벤처기업 간 기술중심의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대기업의 1차 협력사에 대한 원가자료 요구를 근절하고, 대기업의 협력사에 대한 보복조치 금지를 법상에 명문화하며, 기술탈취시 입증책임을 피고에게 전환하고 기술(인력) 유출로 인한 특허분쟁시 손해배상액 법원판결에 시장가치 반영하는 등 특단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 Ⅳ. 주요이슈별 벤처정책

### 1. 스타트업(창업벤처)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 제도' 도입

세계 주요 국가들은 저성장 기조에 따른 생존전략으로 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정책 및 소규모 기업 육성정책에 사활을 걸고 있다. 미국의 'Start-up America', 중국의 '大衆創業 萬人創新', 칠레의 'Start-up Chile' 등이 그렇다. 우리나라도 창업 활성화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지원하고 있으나, 양적 · 질적 측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는 각 행정기관의 부처 이기주의적 자세와 더불어, 창업과 관련한 거미줄 규제(진입규제, 영업규제 등)가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례로 2014년 OECD 발표에 의하면 한국의 행정규제 부담 수준은 2.2점(6점 만점)으로 덴마크(1.4점), 스위스(1.3점), 일본(1.5점) 등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규제개선의 속도가 새로운 신산업 형성 및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기존 기득권 산업의 이해관계에 따른 규제존속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신산업 분야의 혁신적 창업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질적 창업의 확산과 혁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획기적 발상전환과 네거티브형 규제 형태로의 프레임 전환이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다.

따라서 기술창업 벤처기업은 창업후 일정기간((예) 5년) 동안 진입규제, 영업규제 등 각종 규제적용(기존규제 및 신설규제)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환경파괴, 국민안전 등을 위협하는 최소한의 네거티브 방식 규제만을 적용하는『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도입을 벤처특별법 등에 설치하는 것이 시급하다. 사례로써 영국의 Micro-business moratorium을 들 수 있는데, 영국은 2011년 4월부터 영세기업(10인 미만 및 창업기업)에게 신설규제 적용을 유예하여 규제비용 부담을 경감해 주고 있으며, 규제의 목적을 위해 필수적인 경우 또는 소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규제개혁위원회(RRC)의 승인을 받아 규제적용 가능토록 하고 있다.

### 2. 창업안전망 확충을 위한 '스타트업 공제제도' 도입

창업실패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여 창업실패(성실실패)에도 재도전이 가능한 선순환 생태계 조성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2015년 창업기업실태조사에 의하면 창업의 장애요인은 첫째 창업자금 확보의 어려움(68.3%), 둘째 창업실패 및 재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27.9%)으로 꼽히고 있다. 실리콘밸리 성공기업인 평균 창업 횟수가 2.8회인 점을 감안하면 창업안전망의 필요성을 알 수 있다. 창조경제연구회가 발간한「창조경제 핵심과제 창업자 연대보증 개선」보고서에 따르면, 폐업한 창업벤처에게 재기기반을 마련하여 해당 기업이 재기에 성공할 경우, 기업 하나당 70억 원 이상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한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다각적인 재도전 저해요인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수 인력은 창업을 기피하고 재도전 기업인들이 겪는 어려움은 여전하다. 단적인 예로 벤처기업 석박사 창업비율은 보면 2009년 31.7% 이던 것이 2010년 28.6% 그리고 2012년에는 26.3%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창업실패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책임 우려에 따른 소극적 지원 그리고 차별적 제도와 관행이 있기 때문이다.

본 공제제도와 유사한 사업으로, 폐업시 대표자의 생활 안정이나 재창업 지원을 위한 제도가 존재하지만 이는 실패 창업자에 대한 재창업을 위한 실질적 지원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평가한다. 즉,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 소상공인 대상으로 폐업 · 노령 등 생계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주목적이다. 중진공의  재창업지원자금 또한 대출 형태의 자금 지원으로서 엄연히 상환 의무가 있다.

따라서 성실실패로 판정된 벤처 및 혁신형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재창업 기반 마련을 위한 재창업자금 공제사업 운영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단, 본 자금은 압류가 불가하도록 공제금 지급권리의 양도 · 압류 · 담보제공 등을 못하도록 명시하여야 하겠다. 일례로 노란우산공제도 압류금지 근거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9조에 '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공제 가입을 희망하는 창업자는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민간자본)하여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정부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매칭펀드 형태로 조성함이 바람직하다. 해지환급금 지급에 관하여는 공제가입기업이 창업 이후 5년간 생존 시, 납입한 금액의 50%를 '해지환급금' 명목으로 지급하며 기업이 해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 계속 납입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 한편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되어야 하는데, 폐업 후 공제금 지급 신청 시, 성실경영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공제가입 6개월 이후부터 공제금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청의 「재창업자 성실경영평가에 관한 규정」 중 공제금 지급 이후의 사후관리 조항을 살펴보면 공제금을 수령한 기업은 수령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 재창업을 하도록 하며, 현장 실사 등을 통하여 실제 사업의 운영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 3. 국가차원의 기업가정신 교육 로드맵 수립

기업가정신은 혁신경제 구현의 핵심으로서 선진국은 초등학교 과정부터 창업에 대한 의지 및 문제 해결능력을 키우기 위해 기업가정신 교육을 도입 중이다. 기업가정신이란 타고난 고유의 성격이 아닌 육성되고 개발되는 역량으로서, 조기교육은 '지속적 혁신과 새로운 기회에 대한 모색'을 고취하는 방향으로 추진됨이 바람직하다. 특히 한국은 기회형 창업이 위축되고, 기업이 신규투자를 기피하는 현상을 비롯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도전과 모험정신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가정신'이 급속도로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기업가정신발전기구가 발표한 2017년도 한국의 글로벌 기업가정신 지수는 27위이며 OECD 34국 중에서는 23위를 차지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2018년 개정 중·고교 교과과정(사회탐구)에 기업가정신 내용의 반영을 발표하였으나('15.6), 초등과정 도입은 교육당국의 반대로 포함되지 못하였다. 이와 더불어 기업가정신 교육에 관한 중장기적 국가로드맵의 조속한 수립이 필요하며, 체계적인 교육의 기초가 되는 기업가정신교육 교사양성 프로그램도 시급히 마련하여야 한다. 아울러, 예비 창업자나 창업기업 대표 등에 특화된 기업가정신 교육과정((예) Entrepreneur Management) 및 경력단절자, 소외계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기업가정신 교육을 정부가 체계적으로 주도함으로써, 각 사회 구성원에게 혁신의 확산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미국의 기업가정신 전문기관인 카우프만재단과 같은 관련 기관의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유럽/미국의 기업가정신 교육 사례**

2006년 유럽집행위원회에서도 오슬로아젠다를 통해 '단순한 기업운영을 위한 필요성이 아니라, 전국민들의 창의성, 자율성, 진취성,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하여 기업가정신의 평생교육과 초등학교부터의 교육 의무화 권고'. 즉, 유럽국가 중 약 2/3와 미국의 10개 주에서 이미 초등과정부터 기업가정신 교육을 의무화

### 4. 네거티브 방식으로 엔젤투자제도 전환

창업활성화의 한 축인 엔젤투자는 2000년 IT붐이 붕괴되면서 투자열기가 급격히 냉각되었고, 벤처투자의 신뢰성 저하로 인한 투자자 이탈 및 중간회수시장 부재 등으로 위축되었으나 2015년부터 다소 증가 추세에 있다.

하지만 전문엔젤 등록요건이 '최근 3년간 창업·벤처기업에 1억 원 이상 투자하고, 지분을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요건이 있어 업계에서는 이를 대폭 완화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세제지원 또한 기존 엔젤투자 매칭펀드의 투자를 받거나 벤처확인을 필한 기업, 또는 기보나 중진공으로부터 인정받은 창업 3년 이내 기술우수기업에 한해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초기 창업기업이 창업 3년 이내 기술성 우수기업으로 평가 받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전문엔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행의 경력요건 자격 등 사전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문제발생시 사후규제 하는 형태로의 전환을 고민해 보아야 하겠다. 현행 전문엔젤 자격요건은 상장사 창업자 또는 3년 이상 임원 재직자, 2년 이상 심사역 재직자, 기술사, 박사

**표 1.** 엔젤투자 유치기업수 및 투자액 (단위 : 억 원, 개사)

| 구분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
| 투자액 | 5,493 | 3,409 | 1,109 | 3,031 | 463 | 820 | 971 | 897 |
| 기업수 | 1,291 | 1,007 | 573 | 453 | 194 | 174 | 238 | 220 |
| 구분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투자액 | 492 | 346 | 341 | 428 | 557 | 566 | 834 | 1,399 |
| 기업수 | 152 | 87 | 83 | 66 | 91 | 167 | 207 | 295 |



등으로서 매우 까다로운 실정이다.

조특법 제16조 1항에 의한 현행의 엔젤투자 소득공제 범위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즉, 투자액 1,500만 원까지는 100%, 5,000만 원 이하는 50%, 5,000만 원 초과시 30% 공제로 되어 있으나 이를 5,000만 원까지는 100%, 5,000만 원 이상은 현행의 제도를 따르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더불어 피투자기업의 요건으로, 현행 '기보 또는 중진공으로부터 인정받은 창업 3년 이내 기술성 우수기업'에서 '창업 7년 이내 기술성 우수기업'으로 소득공제 대상기업을 확대하는 것도 방안이다.

## 5. 사내벤처를 통한 분사창업기업의 초기안정화 지원

사내벤처 제도는 모기업의 지속적 혁신(Innovation)과 다양한 사업기회 포착을 유도하고, 질 높은 창업기업의 생성을 유인하여 사회전반의 창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사내벤처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모기업의 다각화, 신기술 개발 결과의 활용 다변화, 신사업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우수인력의 유출 방지 그리고 유휴 인력의 활용에도 큰 기여를 한다. 또한 사내벤처는 본질적으로 기존 모기업의 기술 또는 시장의 시너지를 활용함으로써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다. 기업의 사내벤처 도입사례를 살펴보면 삼성전자의 'C-Lab', 네이버의 'Cell', 구글의 'Area 120', 애플의 '해적단', GE의 'FastWorks', 시스코의 'ETG', 소니의 'First Flight' 등 다양하다. 가장 혁신적인 기업으로 불리는 구글도 자체적 혁신보다는 M&A를 통하여 기업의 혁신동력을 외부에서 찾고 있는데, 2010년 이후 총 154건의 M&A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된다.

참고로 창업에 대한 통계를 살펴보면 창업주의 이전 근무지 유형으로 기업체 출신이 대다수를 차지하며, 非기업체 출신과의 성과 비교에서도 우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6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에 의하면 기업체 출신 창업기업의 2015년 평균 매출(72억 원)과 종사자 증가율(+1.7%)이 非기업체 출신보다(56억 원, -2.9%) 높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사내벤처 제도가 성공창업을 위한 주요수단이 되는 만큼 정책적인 지원도 요구되고 있다. 먼저 분사기업의 상호출자기업집단 편입유예이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대기업의 분사기업(Spin-off) 대해서는 대기업 보유 지분과는 관련 없이 7년간 상호출자기업집단 편입을 유예하는 것이다. 다음은 모기업으로의 재합병시 법인세 공제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조특법을 개정하여 분사 후 7년 이내 대기업으로의 재합병시에는 M&A 거래액 중 기술가치금액에 대한 법인세 공제 범위를 현행의 10%에서 30%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있다. 또한 사내벤처기업의 법인세 혜택이다. 분사 후 7년 이내 기업의 매출 및 이익금에 대해, 모기업에게는 법인세 감면 혜택(연결 재무제표상)과 분사기업에게는 3년간 취·등록세 감면

혜택 부여하는 것이다. 소위 영국 등의 Patent Box 제도를 준용하자는 것인데, Patent Box는 연구개발 프로젝트와 지식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줄여주는 제도이다.

## 6. 스톡옵션 활성화를 위한 회계처리 기준 개선

스톡옵션은 기업의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2002년 회계기준 변경, 2006년 비과세혜택 폐지 등으로 전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2년 엔론사태 이후 국내에서도 스톡옵션 비용처리가 의무화('02) 되었고, 2006년에는 매입가격 5,000만 원까지 비과세제도가 일몰에 의해 폐지된 상황이다. 또한 벤처기업 스톡옵션 발행도 벤처붐('97) 당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사실상 제도도입 취지를 상실한 상태라고 해도 무방하다. 스톡옵션 발행 비상장 벤처기업만 보아도 2002년 327개 사 이던 것이 2008년에는 110개 사 그리고 2013년에는 83개 사로 추락하였다. 2015년 맥킨지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은 미국 창업자에 비해 고학력의 인재 보유가 현저히 적음을 알수 있는데, 이중 석·박사의 비중이 한국 18%이나 미국은 40%에 달한다. 즉, 미국의 IT 부문에서 고급 학력을 보유한 고숙련 관리자를 영입하는데 스톡옵션이 큰 역할을 하지만, 한국 벤처기업은 우수인재 유치에 효과적인 인센티브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스톡옵션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상장을 준비 중인 비상장 벤처기업의 스톡옵션이 비용처리되지 않도록 코스닥상장위원회 상장기준에 예외를 두는 것이다. 현재 스톡옵션은 발행기업이 국제회계기준(K-IFRS) 및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비용(주식보상비용)으로 처리되고 있는 바, 예비 상장기업의 스톡옵션을 비용처리함에 따라 상장요건 충족 및 공모가 산정 등에 있어 불리해지는 애로가 있다. 즉, 재무제표를 근거로 주당순이익(EPS)를 산출하여 동종업종 주가의 평균 주가수익비율(PER)을 적용하여 산정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스톡옵션 행사시 비과세제도를 재도입하는 것이다. 연간 주식매입가격을 기준으로 5,000만 원까지 비과세를 재도입해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방안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이는 2006년 이전의 세제정책으로 회귀하자는 것인데, 지속적인 비과세 혜택이 곤란할 경우 최소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고민해보아야 하겠다.

## 7.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자본시장법에 의거 2016년에 도입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일반투자자의 투자한도 제한과 환매금지 규정으로 인해 제도 활성화에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다. 최근 투자한도 증액의 움직임은 있지만 일반투자자의 경우 동일기업의 투자한도는 200만 원 이하이며, 1년간 누적투자금액은 500만 원이하로 제한한다. 또한 일반투자자는 증권 취득 이후, 1년간 매각하지 못하는 환매금지 규정도 존재한다. 이는 미국의 JOBS법을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이며, 이후 제도화된 선진국(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등)은 이미 환매금지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한편,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은 증권형 대비 대중인지도가 높고 스타트업의 참여가 용이하나, 관련 법의 미비로 제품의 사양 변경, 배송지연 등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며 문제해결은 개별계약에 따라 처리하고 있는 형편이다.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은 프로젝트에 펀딩한 투자액의 대가로 그 업체가 만든 제품이나 서비스를 돌려주는 방식인데 미국의 킥스타터는 창업기업 자금조달의 상징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통신판매에 준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과 기본 법률체계와의 괴리로 선의의 위법요소 발생과 더불어 분쟁 발생 시 적용할 법규가 없어 개별 후원자 및 자금수요자(스타트업)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크라우드펀딩에 의한 스타트업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일반투자자 투자한도를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즉, 동일기업 투자금액을 현행 2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연간 누적투자금액을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늘리는 것이다. 더불어 보상형 크라우드펀딩도

법제화를 통해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의 권한과 의무를 명확히 해 고객 응대 및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대중의 이해와 신뢰도를 높혀 제도의 활성화 꾀하여야 한다. 제도를 법에 담는 문제에 있어서도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사례와 같이 자본시장법과 같은 규제법안으로 마련된다면, 크라우드펀딩 활성화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므로 동 산업을 진흥시킬 수 있는 진흥법안(벤처특별법 등)으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아야 하겠다.

## 8. 기술경쟁 중심의 공정거래 시장질서 조성

2016년도 벤처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벤처기업의 거래처별 불공정거래 경험 여부는 '대기업에 납품하는 1,2차 벤더'와 거래 시 18.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대기업 또는 대기업 그룹소속사'가 17.0% 순이다.

이러한 불공정거래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의 하청관계 및 거래중단 등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그림 2.** 불공정거래 경험 여부 및 심각성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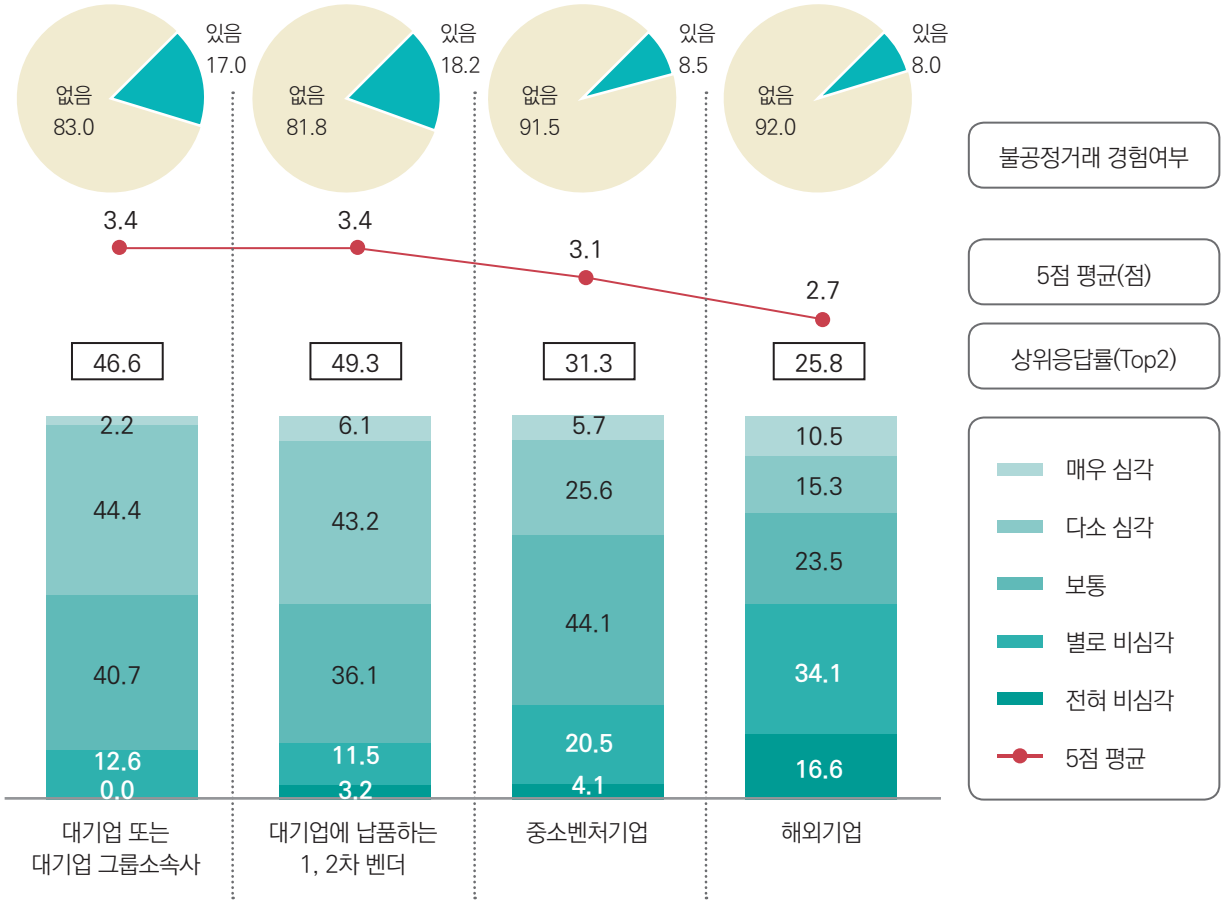


※ 2016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벤처기업협회

**표 2.** 한국과 미국의 특허분쟁시 평균 손해배상액

| 구분 | 한국 | 미국 | 비교 |
|---|---|---|---|
| 국제특허소송(08년~13년 6월) | 193건 | 955건 | 5배 |
| 특허침해소송 배상액<br>(한) 09~13년 / (미) 07년~12년 | 5,900만 원 | 약49억 원<br>(490만 불) | 83배 |

※ 자료: 특허청 2016,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부좌현 의원 분석

법적 대응 및 제도적 절차 시행을 꺼려하는 벤처기업이 많은 것으로 추정한다. 해결방안으로써 대기업의 1차협력사에 대한 원가자료 요구를 근절하여 공동창출 이익에 대한 공정분배의 시장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원가자료 요구는 불공정거래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공정분배 불균형으로 이어져 대중소 간 임금격차로 귀결된다.

또한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에 보복조치 금지규정을 신설하여, 이를 위반할 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토록 하고, 공정위는 신고건을 기각할 시 기각사유를 분명히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에 대한 불공정행위 제소시, 대기업의 수주제한 등 보복조치에도 마땅히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법정분쟁에 있어서도 대중소기업간의 기술 및 인력유출로 인한 피해발생시 기술탈취에 대한 입증책임을 대기업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도입하여야 한다. 이뿐 아니라 기술중심의 공정거래 정책을 위해서는 대기업의 수요예보제 도입,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 근절, 구두발주 지양, BMT 비용의 합리적 부담 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 9. 기술분쟁 손해배상액의 시장가치 반영

벤처기업은 대기업과의 하도급 거래시 불리한 입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기술 및 특허분쟁에서도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대기업은 중소벤처의 기술을 제값을 주고 인수하기보다는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핵심인력과 기술을 도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참고로 최근 5년간 대·중소기업 간 특허분쟁 심판현황에서 원고인 중소기업의 평균 승소율은 42%이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11년 44.6%, '12년 40.7%, '13년 36.6%, '14년 44.9%, '15년 44.9% 이다. 또한 분쟁사건 진행시 당사자인 대기업의 보복조치, 과다한 소송비용, 선진국에 비해서 낮게 책정된 법원의 손해배상액 등으로 적극적인 대처가 어려운 상황이다. 참고로 2015년 9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법 위반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기술유용의 경우 5억 원 이내에서 정액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사실상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피해규모는 기업당 평균 약 25억 원으로 상당히 심각한 실정이다. 위의 표에서 보듯이 기업 간의 불법적인 기술유출, 핵심인력 빼가기 등 특허분쟁시 법원의 손해 배상액은 시장가치에 맞게 대폭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특허침해로 인한 분쟁발생시 침해자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 보아야 하겠으며, 공익변리사가 대리할 수 없는 민사소송사건 비용도 현재 사건당 지원한도 500만 원, 대기업 분쟁시 1,000만 원인데 이의 확대가 필요하다. 즉, 사회적 약자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부사업 예산을 현실적 수준에 맞게 조정하자는 것이다.

## 10. 기술혁신형 기업의 M&A시, 매수기업 법인세 공제 확대

벤처생태계에 있어 회수시장 조성은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성공적 Exit을 통한 소위 '대박 스토리'는 창업의지를 고양하며,

회수자금을 활용한 민간시장에서의 재투자가 이루어짐으로써 선순환 생태계 구축에 크게 기여한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회수수단 중 IPO와 M&A의 비중이 거의 대등한데 비하면, 한국의 경우 M&A에 의한 회수는 2~3%에 불과한 상황이다. 정부에서는 2014년 1월 조특법을 개정하여 벤처기업, 이노비즈 기업 등 기술혁신형 기업의 기술취득을 위한 M&A인 경우 R&D에 준하여 기술평가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하지만 미국 생태계에 비하면 국내 M&A 시장이 사실상 고사상태임을 감안하면, 이보다 더 과감한 매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M&A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기업 등 잠재적 매수수요의 확대가 가장 중요하며, 따라서 매수수요 확대를 위한 보다 공격적인 유인책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매수기업 법인세 공제율을 기술가치금액의 1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11. 성실실패자를 위한 원칙적 재도전 기회 제공

벤처기업을 창업해 사업을 영위하다가 파산이나 부도가 발생할 경우 기업인은 재도전할 기회를 찾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청년층의 창업의욕 저조의 가장 큰 원인은 파산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즉 실패의 대가가 너무 가혹하다는 점이며, 신용불량과 재기에 대한 두려움 등이 재도전의 장애요인이기도 하다. 한국은 주채무자인 법인과 보증인이 연대하여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으므로 주채무자가 파산했다고 해서 자신의 보증채무도 면책되지 않는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연대보증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신보와 기보 그리고 중진공, 지역신보 등에서 창업 5년 이내의 법인은 연대보증을 폐지토록 하였으나 시중은행 및 제2금융권은 아직도 연대보증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재도전을 가로막는 또다른 문제는 2차 납세인데, 벤처기업의 경우 과점주주인 벤처창업자 또는 투자자가 실패시 투자원금 손실뿐만 아니라 2차 납세의무까지 부담하게 되어 재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자영업 창업은 오히려 높은 폐업율과 높은 부채로 인해 국가경제에 부담이 되지만, 혁신형 창업은 고용창출 효과 및 생존율이 생계형 창업에 비해 각각 3배, 2배 정도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혁신기업의 재도전 정책을 중요성을 알 수 있다. 더불어 국가의 미래가치 창출의 해법인 혁신형 창업기업의 성실실패자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확대함과 더불어 고의적인 실패자에 대한 가중처벌도 강화해야 한다.

## Ⅴ. 결론

이상으로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한 11가지의 구체적인 정책 어젠다를 살펴 보았는데, 제3기 벤처정책의 방향을 정리하자면 4차 산업혁명 등 글로벌 신조류에 대응하여 발빠르게 신산업과 신시장을 선점하도록 육성하고 관련 규제는 과감히 해소하고자는 것이다. 즉, 우리경제를 이끌어 온 주력산업의 패러다임 재편에 대비하여 벤처기업의 다양한 사업모델이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사업화 되고 기존 산업과의 융합과 협업을 통해 서로 윈윈하는 상생모델이 되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과거 정부에서 수립된 창업벤처 활성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되고 성과로 이어지도록 관리해야 하겠다.